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찰·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686”을 “6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85”를 “687”로 하며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“129”를 “131”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총계 “702”를 “70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01”을 “703”로 하며, 행정주사·식품위생주사·약무주사·의료기술주사·전산주사·시설주사·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“125”를 “12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•		•		
			<u>686</u>		<u>688</u>	+2	
일	반	직	•		•		
계			•		•		
			<u>685</u>		<u>687</u>	+2	
			•		•		
			•		•		
행	정	주					
주	사	•					
식	품	위					
생	주	사					
•	약	무					
주	사	•					
의	료	기					
술	주	사					
•	전	산					
주	사						
•	시	설					
주	사	•					
공	업	주					
사							
또							
는							
수	의	주					
사							
			•		•		
			•		•		

[별표 3의2]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02</u>	<u>704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701</u>	<u>703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약무 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전산주사 · 시설주사 · 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	<u>125</u>	<u>127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